공지사항 : 공인원가분석사 위상제고와 업무영역 확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인원가분석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국가공인 원가분석사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인적 필수요건(6인이상)으로 되어 한층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분석사회는 앞으로도 자격증의 가치제고와 업무영역의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장 이종득

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인적구성 요건에 필수요원으로 규정화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말 계약예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면서 **분석사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가계산 인적구성요건 관련규정도 개정('15.12.31)

○ 개정내용 : 기관 구성원 10인 이상 중 **국가공인원가분석사 6인** 이상 또는 업무경력자 6인 이상으로 구성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제1항 제2호

2. 국토교통부는 공인원가분석사가 공동주택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 공동주택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시 전문가에 자문하여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하도록 규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3항)

○ 동 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분석사회에서 공인원가분석사 및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업무성격상 자문역에 해당된다는 건의를 한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문역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수령('15.11.27)

※ 이에 따라, 한국원가분석사회에서는 입찰가격 작성기준, 자문업무 수주방법 등 자문업무 전반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공인원가분석사 전 회원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 회장 이 종 득 배상